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람	기 관 의 장

공보

제 913 호 2014. 10. 27(월)

고 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77호[소하천점용(변경)허기 고시] ····· 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78호[소하천점용허기 고시] ····· 3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80호[도로명주소 고시] ····· 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8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6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64호[「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65호[「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66호[공인 등록 공고] ····· 1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68호[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70호[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81호[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6

안내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회람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177호

소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변경)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table>
<tr><td>성 명</td><td colspan="5">정진국</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27, 108동 2206호</td></tr>
<tr><td>점용위치</td><td colspan="2">- 당초 : 천곡동 776-2번지
- 변경 : 천곡동 776-3번지</td><td>하 천 명</td><td colspan="2">순금천</td></tr>
<tr><td rowspan="3">점용목적</td><td colspan="2" rowspan="3">- 당초 : 진입로 포장 (콘크리트)
- 변경 : 진입로 포장 (쇄석)</td><td rowspan="3">점용면적
(㎡)</td><td>구 분</td><td>당초</td><td>변경</td></tr>
<tr><td>소하천</td><td>27</td><td>122</td></tr>
<tr><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점용기간</td><td colspan="5">○ 일 시 -</td></tr>
<tr><td colspan="5">○ 영 구 2014. 01. 07. ~ 2018. 12. 31</td></tr>
<tr><td>토지 소재지</td><td colspan="5">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소재지</td><td rowspan="2">지 번</td><td rowspan="2">지목</td><td rowspan="2">편입면적(㎡)</td><td rowspan="2">소유자</td></tr>
<tr><td>구,군</td><td>동,리</td></tr>
<tr><td>당초</td><td>북구</td><td>천곡동</td><td>776-2</td><td>전</td><td>27</td><td>정진국</td></tr>
<tr><td>변경</td><td>북구</td><td>천곡동</td><td>776-3</td><td>전</td><td>122</td><td>정진국</td></tr>
</table>
</td></tr>
</table>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178 호

소하천점용허가 고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table>
<tr><td>성 명</td><td colspan="6">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td></tr>
<tr><td>주 소</td><td colspan="6">울산광역시 중구 학성1길39</td></tr>
<tr><td>점용위치</td><td colspan="2">창평동</td><td>하 천 명</td><td colspan="3">차일천</td></tr>
<tr><td>점용목적</td><td colspan="2">- 수리시설 설치 (용배수로)</td><td>점용면적 (㎡)</td><td>구 분
소하천</td><td>일시
-</td><td>영구
2,072</td></tr>
<tr><td rowspan="2">점용기간</td><td colspan="2">○ 일 시</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 영 구</td><td colspan="4">2014. 10. 27. ~ 영구</td></tr>
<tr><td>토지 소재지</td><td colspan="6">
<table>
<tr><td colspan="2">소재지</td><td rowspan="2">지 번</td><td rowspan="2">지목</td><td>편입면적(㎡)</td><td rowspan="2">소유자</td></tr>
<tr><td>구,군</td><td>동,리</td><td>하천구역</td></tr>
<tr><td>북구</td><td>창평동</td><td>1127</td><td>구</td><td>2,072</td><td>농림축산식품부</td></tr>
</table>
</td></tr>
</table>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180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2길 11(염포동)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0.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11-2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2길 11(염포동)	2014-10-27	예로부터전해져내려오고현재도사용중인마을이름으로누구나쉽게알수있는이름이므로 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1-05	
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11-2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2길 13(염포동)	2014-10-27	예로부터전해져내려오고현재도사용중인마을이름으로누구나쉽게알수있는이름이므로 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1-05	
3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14-1, 516-10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0길 2(염포동)	2014-10-27	예로부터전해져내려오고현재도사용중인마을이름으로누구나쉽게알수있는이름이므로 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1-05	
4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31-1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591-6(양정동)	2014-10-27	염포항개항지를연결하는도로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5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58-2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40-1(산하동)	2014-10-27	이지역의지형에따라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8-20	
6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218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448(어물동)	2014-10-27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8-20	
7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776-2	울산광역시 북구 선장골길 26(천곡동)	2014-10-27	기존자연마을인선장골에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8-09	
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7-7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41(호계동)	2014-10-27	기존희망길이추상명사이므로도로명사용으로부적합하고동대로에분기하므로 일련번호방식에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7-7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43(호계동)	2014-10-27	기존희망길이추상명사이므로도로명사용으로부적합하고동대로에분기하므로 일련번호방식에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10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34-4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20(신천동)	2014-10-27	매곡동의지명을반영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1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64, 645-1	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 2(효문동)	2014-10-27	효지승도라는인물의역사적유래를반영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지번추가 645-1
1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63, 666-5	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 8(효문동)	2014-10-27	효지승도라는인물의역사적유래를반영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지번정정 664, 705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18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0길 2(염포동)외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0.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0길 2(염포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14-1, 516-10	2014-10-27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591-6(양정동)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31-1	2014-10-27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선장골길 26(천곡동)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776-2	2014-10-27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64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따른 정화조수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악화와, 위생처리장 이전에 따른 운임비 증가 등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 정비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처리장 이전 등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 <제4조제3항>

3. 입법문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전화 241-7767, 팩스 241-7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대행 계약을 한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제4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제> ② ----------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 ----------. 1. ~ 5.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행계약을 한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조례의 법적근거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 및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함.

2. 법적근거

○ 「자연환경 보전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주요내용

가. 법령 명칭 수정 <제1조, 제3조,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 「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용어 수정(통일) <제3조 ~ 제6조, 제12조 ~ 제14조, 제16조 ~ 제18조>

○ 야생동·식물 ⇒ 야생 생물

○ 외래 동·식물 ⇒ 외래 생물

○ 희귀 동·식물 ⇒ 희귀 생물

○ 보호야생동·식물 ⇒ 보호 야생생물

4. 입법문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전화 241-7767, 팩스 241-7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 기타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3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각각 변경하고,

제4조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제5조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같은 조 제2호 중 “외래동·식물”을 “외래 생물”로 각각 변경하고,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각각 변경,

제12조 제목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같은 조 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각각 변경,

같은 항 제1호의 “희귀 동·식물”을 “희귀 생물”로,

같은 항 제3호의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 야생생물”로,

제13조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각각 변경하고,

제14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각각 변경하고,

제16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제17조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제18조제1항제1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각각 변경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자연자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동·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 생물 ---------- ------- 야생 생물---------- ---------- ----------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생략) ② 주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할 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야생 생물 ----------.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구청장은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략)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 4. (생략)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 ---------- 야생 생물 ---------- ---------- ---------- ----------. 1. (현행과 같음) 2. 외래 생물---------- ---------- 3. ~ 4. (현행과 같음)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4. (생략)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야생 생물----------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6. ~ 7. (생략)	5. ---------- 야생 생물, 보호 야생생물 ---------- 6.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역 3. 보호야생동·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 ③ (생략)	제12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 생물 ---------- ----------; 1. 희귀 생물---------- ---------- 2. ---------- ---------- 야생 생물 3. 보호 야생생물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에 야생동·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②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생략) 1. ~ 2. (생략) 3.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야생 생물---------- ----------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야생 생물---------- ---------- ----------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야생 생물---------- ---------- ---------- 4. ------- 야생 생물---------- ---------- ----------
제14조(출입제한) ① 구청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제14조(출입제한) 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현 행	개 정 안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2. ~ 4. (생략) 5.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 ---------- ---------- ---------- ---------- ----------. 1. 야생 생물 2. ~ 4. (현행과 같음) 5. ------- 야생 생물----------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6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 ---------- 야생 생물----------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생태통로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동·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생태통로의 설치) ---------- ---------- ---------- 야생 생물 ---------- .
제18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생략) 1.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 2. ~ 3. (생략) ② (생략)	제18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보호 야생생물---------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866 호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신규공인 최초사용 가능일: 2014년 10월 27일**
☐ **등록 사유: 송정동주민센터 민원실 자동인증기 구입**
☐ **등록 공인**

공 인 명	규 격(cm)	서 체	비고
(민원사무전용) 울산광역시북청장인	2.4×2.4	한글전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68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장교육 의무화 및 미이수 시 통장의 신규 위촉과 연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관련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관련조문 삭제(안 제7조의2제2항~제4항)

- 통장교육 의무화 삭제
- 통장교육 미이수시 신규 통장 위촉 및 연임 제한 규정 삭제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제2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참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참여과
- 전화번호: 052)241-7272, 팩스번호: 052)241-72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생 략)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직 중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소멸된 때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8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여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1조제3항)

3. 근거법규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의 2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농수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우 683-707/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농수산과
- 전화번호 : 052-241-8052, 팩스번호 : 052-241-8059

6.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제1조의2”를 “제11조의2”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조의 2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 6. (생략)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구청장은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 2에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생략)	**제11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8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정이유

중소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북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자금의 지원(안 제3조)

다.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융자금액, 융자계획, 융자 신청 및 추천, 상환에 관한 사항(안 제5~9조)

마. 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기술 및 인력양성지원 등(안 제10~13조)

바. 기업단체 지원, 고용촉진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14, 1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 기업은 2014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처 :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경제일자리과(우편 683-707)

(전화 : 052-241-7711, FAX : 052-241-7709, E-mail : buk2006@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북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 이라 한다)" 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와 협약하여 자금의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 이란 제3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북구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장등록"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말한다.

제3조(자금의 지원) ①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안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공장등록을 마친 자.
2. 구청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제5조 (협조융자 추천 지원 및 조건) ①구청장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도록 추천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 (융자금액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융자조건 · 융자기한 · 이자차액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 · 사업별 융자한도 · 융자조건 · 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신청)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추천)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 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①경영안정자금의 융자상환 및 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융자기관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자차액을 보전하지 않는다.

제11조(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내 · 외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정책개발 추진 등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미래형 자동차등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고문변리사 자문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리사를 위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문 변리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액수와 기준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4조(기업관련 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용촉진 진흥책) 구청장은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체가 융자기간 내 상시고용인원이 늘어난 경우 이차보전율 우대 등 고용촉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경영안정자금 융자, 판로지원, 기술 및 인력양성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변경신고) 자금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구청장과 위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등) ① 위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